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
----------	----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의자 : 위성곤 · 이개호 · 정세균
윤후덕 · 강창일 · 이찬열
박주선 · 홍문표 · 조정식
황영철 · 오제세 · 유성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으로 매년 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및 제90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제90조제1항 중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을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u>綜合編成</u> <u>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u> <u>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u> <u>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u> <u>를 두어야 한다.</u></p> <p><u><신 설></u></p>	<p>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u>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p> <p>1. <u>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u> <u>자</u> 2. <u>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u> <u>사업자</u> 3. <u>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u> <u>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p> <p>② · ③ (생략)</p>
<p>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u>綜</u> <u>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u> <u>행하는</u>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u>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u> ----- ----- ----- ----- -----.</p> <p>1. <u>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u> <u>자</u> 2. <u>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u></p>
<p><u><신 설></u></p>	

<u>사업자</u>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u>綜合編成</u> 또는 <u>報道專門編成</u>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u>綜合編成</u> 또는 <u>報道專門編成</u>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u>綜合編成</u> 또는 <u>報道專門編成</u>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u>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p> <p>④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p> <p>⑤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p>